



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의4서식] <개정 2018. 10. 18.>

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

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11조제2항 단서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을 면제합니다.

1. 상호명: 오성정밀화학(주)

2. 대표자: 안정식

3. 주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24, 6층 (대치동, 사조빌딩)

4. 대상 건축자재: [] 접착제, [] 페인트, [] 실란트, [] 퍼티, [] 벽지,
[] 바닥재, [] 기타()

5. 면제 제품명: 매직씰 HIT-300

6. 유효기간: 2025. 10. 27

(주)태성환경연구소장

